

「CCTV 설치·운영지침」 1차 개정안 조문대비표

<2011.10.01, 제정>

<2017.06.19, 1차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6조(사전의견수렴, 위치 및 촬영범위) ① ~ ③ (생략) <u><항 신설></u></p>	<p>제6조(사전의견수렴, 위치 및 촬영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CCTV의 설치대수 및 위치는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p>-설치대수 위치명기</p>
<p>제8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화상정보는 감시실, 경비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된 녹화서버에 저장한다. ② (생략) ③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해당 저장공간 출입이 허가된 담당자만 갖는다. <u><호 신설></u> <u><호 신설></u> <u><호 신설></u> <u><항 신설></u></p>	<p>제8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화상정보는 감시실, <u>경비실에</u> 설치된 녹화서버에 저장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u>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만 갖는다.</u> <u>1. CCTV 설치·운영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u> <u>2. 시설관리업체 경비업무 담당자</u> <u>3. CCTV 유지보수업체 담당자</u>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경비실에 설치된 CCTV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외부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하며, 영상정보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별지 2호 서식)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p>-설치위치 명확화</p> <p>-화상정보 접근권한 명기</p> <p>-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p> <p>-영상정보 보호조치</p>
<p>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시 정보주체는 직접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책임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③ (생략) <u><부칙 신설></u></p>	<p>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시 정보주체는 직접 <u>경비실로</u>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u>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별지 1호 서식)</u>」를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u></p>	<p>-영상정보 열람요구 에 대한 조치</p>

CCTV 설치 · 운영 지침

경기과학기술대학교

CCTV설치·운영 지침

<2011.10.01, 제정>

<2017.06.19,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내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 출입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4조(CCTV 설치의 목적)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건물 및 부대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출입자를 통제 및 사고예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①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자는 경영관리처장으로 하고, 운영책임부서 및 책임자는 총무팀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② CCTV의 설치 및 개인화상정보 처리 및 제공시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의 협조하에 진행한다.

제6조(사전의견수렴, 위치 및 촬영범위) ① CCTV 설치 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장소의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일반 공공장소는 홈페이지 등에 알림 및 공지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② CCTV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대학내로 한정한다.

③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④ CCTV의 설치대수 및 위치는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조(안내판 설치) ① CCTV의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총괄책임자 및 연락처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내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8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화상정보는 경비실에 설치된 녹화서버에 저장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 경과시 삭제한다.

③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만 갖는다.

1. CCTV 설치·운영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
2. 시설관리업체 경비업무 담당자
3. CCTV 유지보수업체 담당자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경비실에 설치된 CCTV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외부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하며, 영상정보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별지 2호 서식)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정보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정보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

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시 정보주체는 직접 경비실로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영상정보(<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존재확인) 청구서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 체 적 으 로 요청하지 않 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 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5.01.01 18:30 ~ 2015.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분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p>「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경 기 과 학기 술 대 학 교 귀 하</p>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 공 형태	기간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CCTV설치 운영지침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일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CCTV설치 운영지침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일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CCTV설치 운영지침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일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CCTV설치 운영지침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일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CCTV설치 운영지침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일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CCTV설치 운영지침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일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CCTV설치 운영지침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일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CCTV설치 운영지침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CCTV 설치현황

2017. 6. 15

순	건물명	건물준공	설치대수	네트워크 연결대수	실시간관 제	공개장소	설치연도	설치위치	비고
1	대학본관(M동)	1999	4	0	0	X	2008.02	전산실4	
			3	0	3	O	2013.01	1층출입구-2, 후면외부-1	
2	창조A관(A동)	1999	2	0	2	O	2013.01	1층출입구-2	
3	창조B관(B동)	1999	2	0	2	O	2013.01	1층출입구-2	
4	창조C관(C동)	1999	3	0	3	O	2013.01	1층출입구-2, 2층D동통로-1	
4	창조C관(C동) 증축	1999	7	0	7	O	2014.04	3층복도4, EV내부1, 서버실2	
5	학생회관(D동)	1999	1	0	1	O	2009.11	3층ATM-1	
			3	0	3	O	2013.02	1층로비-1, 2층출입구-2	
			10	0	10	O	2015.02	증축건물 1층-6, 2층-2, 3층-2	
6	연결복도	1999		0		O			
7	경비실	1999		0		O			
8	창조E관(E동)	2001	4	0	4	O	2013.02	1층출입구-2, 좌우외부계단-2	
9	정보문화관(L동)	2003	2	0	2	O	2009.11	3층ATM-1, 종합자료실-1	
			5	0	5	O	2013.02	1층후문-1, 3층-4	
10	창조V관(V동)	2004	5	0	0	O	2004.11	종합실습실 5	
			2	0	2	O	2013.02	주출입구1 부출입구1	
11	도장시스템실(F동)	2006		0		O			
12	체육관(G동)	2006	3	0	3	O	2013.02	1층출입구-2, 경기장 1	
13	육교	2006	2	0	2	O	2006.05	L동입구 1, D동입구 1	
14	제1중소기업관(H동)	2007	4	0	4	O	2013.02	1층출입구-2, 외부계단-1, 1층복도-1	
15	다송학사1관	2009	29	0	29	O	2009.08	전층	
			3	0	3	O	2012.5.3	2,4,7층 휴게실	
16	다송학사2관	2012	23	0	23	O	2012.03	전층	
			4	0	4	O	2012.5.3	로비, 2층소관입구, 2층복도, 멀티미디어실	
	계		121	0	112				